

노 사 협 의 안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 출연지부 서울디자인재단노동조합지회와 서울 디자인재단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단체협약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노사 간 협의 및 합의한다.

□ 주 52시간 근무 시행의 건

1.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의 근무일수 1주(7일) 기준을 토-일-월-화-수-목-금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
2. 주 52시간 근무 시행과 관련하여 각 개인은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재단은 사내교육 및 지속적인 공지를 통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한다.
 - 부서장 : 부서원 업무조정을 통해 부서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 부서원 : 전사 직원 교육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 준수 독려
3. 재단은 신규채용, 예산확보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무 시스템을 정비하여 2019년 1월부터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토록 한다.
4. 재단은 2018년 7월부터 제3항 시행일까지, 직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수당 또는 대체휴가를 부여토록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 수당 지급기준 : 재단 보수규정 및 내규에 따름
 - 대체휴가 지급기준 : 월단위 집계, 3시간 당 대체휴가 0.5일 부여, 개인별 신청
 - 대체휴가 사용기준 : 익월 10일 ~ 익월 말까지 사용
5. 재단은 2019년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른 수당 지급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서울시 주무부처 협의 및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
6. 재단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의거하여 휴일근무 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무시간 내 직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한다.

□ 2018년 연차축진제도 시행의 건

1. 2018년 연차축진제도의 적용대상은 서울디자인재단 전 직원으로 하되, 1년 미만 입사자는 제외토록 한다.
2. 2018년 발생 연차휴가는 2018년 12월 31일 내 최대 잔여 0일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3.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잔여분은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
4. 2018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처리된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아니하며 소멸된다.
5.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원활한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 재단은 주 52시간 근무 및 연차사용축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체휴가 및 연차사용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제한 자에 대해서는 힘희롱으로 규정한다.

2018. 6. 27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경영지원팀장

(인)
최규환 (인)
서혜영 (인)

서울디자인재단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노조부위원장

노조사무국장

윤여삼 (인)
홍성영 (인)
오진섭 (인)